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여는 충남교육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계획

2012. 4.



순서

I. 추진배경	1
II. 추진방향	2
III. 직무분석	2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직종별 직무분석 실시 ·	2
② 분석기준일	2
③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2
④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4
IV. 직무분석 결과	6
V. 학교/기관(부서)별 조치사항	7
① 기관(학교) 자체 채용직종 직무분석 실시	7
② 기관별 평가기준 마련	7
③ 무기계약 전환 시기	8
④ 고용관계 종료	8
VI. 행정사항	
① 학교/기관별 전환 계획 제출	8
② 학교/기관별 전환 실적 제출	10

- [붙임 1]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 현황
- [붙임 2] 무기계약 전환 제외대상 직종 현황
- [붙임 3]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및 실적 제출 서식
- [붙임 4] 사업·직종별 자체 직무분석 실시 결과표
- [붙임 5]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 이용방법
- [붙임 6]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및 관련 법령 발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계획

I 주 진 배 경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인력운용상의 이유 등으로 2년 이내 단기고용 후 교체되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하다는 문제 제기
- 이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발표

<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대책 주요 내용 >

-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 *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를 대상
 - *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일정기준 해당자를 전환
- ☞ 관련문서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275(2012. 1.17)
 -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 관계부처 합동)

-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등 고용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에 대한 직무분석과 종사자 개인별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II 주 진 방 향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
-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일정기준 이상 해당자를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III 직 무 분 석

□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직종별 직무분석 실시

- 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명칭을 불문하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직종은 도교육청 수준에서 분석 (붙임 1, 2 참조)
 - 특히, 인건비성 경비로 지원되지 않고 총 사업운영비에서 학교(기관)별 재량에 의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직종도 발굴하여 분석
☞ 교과교실제 및 방과후지원센터(지역) 운영 행정실무원, 초등돌봄교실 강사 등
- 각급학교(기관)별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자체재원으로 채용한 비정규직 직종에 대하여는 학교(기관)별 자체 분석

□ 분석 기준일 : 2012. 3월 말 현재

□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 연중 계속되는 업무^①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②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③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상시·지속적 업무 세부 판단기준〉

(판단기준은 ①, ②, ③이 and의 개념임)

①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 *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여 담당하는 경우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 동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 급식조리원 등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② 분석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어온 업무인지 여부

- * 사업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내에서 유사·동일한 업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온 경우는 포함

☞ 유사 동일한 업무의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어왔는지의 판단 시점

예시) '08.3월 병과후지원센터운영 업무가 신설되어 장학사 1명이 담당하다가, 업무량이 늘어 '10.1월 1년간 비정규직 A를 1명을 채용하여 운영했고, '11.1월에는 비정규직 B를 1년간 채용하여 운영했고, '12.1월에는 다시 비정규직 B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이 업무의 "과거 2년 이상 계속" 의 판단 시점은 '08.3월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처음 고용한 '10.1월로 봄

③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 * 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우 위탁 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체 판단
(매년 공모선정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단순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업무 등인 경우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 가능

□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정부의 복지 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

<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무기계약 제외 사유) >

연번	업무명	
법제4조제1항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법제4조제1항2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제4조제1항3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법제4조제1항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4조 제1항 5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1항 3호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의 전문자격증(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2항 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연번	업무명	
법 제4조 제1항 5호	시행령 제3조 제2항 2호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2항 3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법 제4조 제1항 6호	시행령 제3조 제3항 1호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시행령 제3조 제3항 2호	군사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3항 3호	특수한 경력을 갖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3항 4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 겸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시행령 제3조 제3항 5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3항 6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시행령 제3조 제3항 7호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 및 제육지도자
	시행령 제3조 제3항 8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직무분석 결과 “②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어온 업무가 아닌 경우”로써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닌 경우는 기간제로 운영 되되, 사업기간이 2년이 경과할 때에는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에 대한 직무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무기계약 전환 여부 결정
- 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 등이 예상되는 경우 기간제로 운영 가능(다만, 해당자의 근속기간이 2년 경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IV

직무분석 결과**□ 교육비특별회계 지원 직종 직무분석 결과**

- 교육비특별회계 지원 직종은 본청 차원에서 직무분석

2012.3월 현재

구분	합계	사업·직종별 상시·지속적 업무 직무분석 결과			비고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 직종	소계	
직 종 수	60	26	34	60	
배치인원	8,776	4,537	4,239	8,776	

* 직무분석결과 직종별 세부현황은 [붙임 1, 2] 참조

□ 직무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

- 2012. 3월말 현재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분류된 직종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계약종료 시점 또는 그 이전이라도 개인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 단, 무기계약 전환 직종이라도 55세 이상,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기간제법 제4조1항에 해당 될 경우 무기계약 전환 제외
- 또한, [붙임 2]의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인 직종은 제외사유에 해당되도록 운영하여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할 것 다만, 본 추진계획 통보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자는 그대로 인정하고, 기관(학교)의 특수한 여건 상 55세 미만 및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할 경우는 별도 자체 직무분석 후 무기계약직 전환
-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지원 직종별 직무분석에서 한시적 사업 등의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 되었더라도 향후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변경될 경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관(학교)별 자체 고용 직종의 직무분석

- 당해 기관(학교)별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자체 직무분석 후 무기계약 전환여부 결정

V

학교/기관(부서)별 조치사항

□ 기관(학교) 자체 채용직종 직무분석 실시

- 학교/기관별 자체 또는 지자체 지원 등의 예산으로 고용된 직종에 대해서는 [붙임 4] 서식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직무분석을 반드시 실시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개인별 종합평가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지원받아 운영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과 협의하여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를 판단

□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 자에 대한 기관별 평가기준 마련

-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대한 학교/기관별 평가기준 마련
 -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학교/기관별 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합리성 확보
 -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교/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 해당 학교/기관별 자체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전환 제외
- ※ 평가기준 및 평가표는 당해 학교/기관별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또는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관리 이해' 매뉴얼의 근무성적 평정표 등을 참고하여 자체 시행

※ 종합평가 결과 학교가 정한 전환기준(예시 안)

종합평가점수	기준	비고
최우수(86~100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본 내용은 예시이므로 학교별 실정에 맞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우 수(71~85점)	"	
보 통(56~70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미 흡(41~55점)	"	
불 량(40점 이하)	고용관계 종료	

□ 무기계약 전환 시기

-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아도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개인별로 전환하고, 기관(학교)별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종료 이전 조기 전환도 가능
 - 직무분석 결과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붙임 1]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 시점에 반드시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고용계약(근로계약),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등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함을 명기

- 근로계약서 또는 학교/기관별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등에 사유 반드시 명시

VI 행정사항

□ 학교/기관별 전환 계획 제출

-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기관(학교)별 전환계획을 수립·제출
- ※ 봉사·위촉직, 용역근로자 등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므로 전환계획(실적)에 반영하지 말 것

-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http://public-survey.moel.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인화면으로 이동(무기계약직 전환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붙임 5】"에 따라 입력

<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 제출 요령 >

■ (본청 및 직속기관)

- ▶ 본청 각과, 직속기관은 "[붙임 3]서식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과 [붙임 4]직무분석 실시 결과표(본청 각과는 해당없음)"를 작성하여 2012. 4. 20(금)까지 총무과로 공문 제출
- ▶ 본청 및 직속기관 무기계약 전환계획 취합자료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에 2012.4.27(금)까지 입력

■ (지역교육청)

- ▶ 지역교육청 각과, 공립단설유치원은 "[붙임 3]서식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작성하여 2012. 4. 20(금)까지 지역교육청 해당과로 공문 제출
- ▶ 지역교육청, 도서관, 공립유치원 취합자료를 2012. 4. 27(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에 입력

■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

- ▶ 2012. 4. 20(금)까지 자체 채용 직종 직무분석 및 무기계약 전환 계획 수립
- ▶ 학교별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2012. 4. 25(수)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에 입력

< 자료집계시스템 제출 요령 >

-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붙임 3】을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출[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없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합하여 관리하고자 하니,
- (본청 각과, 지역교육청, 공립단설유치원, 공립 초·중·고·특수학교)는 반드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붙임 3】을 자료집계시스템으로 2012. 4. 25(수)까지 제출

□ 학교/기관별 전환 실적 제출8

- 매 반기별 전환자수를 누계로 작성하여 학교/기관별 제출
(상반기 '12.7.6, 하반기 '13.1.4)

-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http://public-survey.moel.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인화면으로 이동(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붙임 5】"에 따라 입력

<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 제출 요령 >

■ (본청)

- ▶ 본청 각과, 직속기관은 "[붙임 3]서식의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작성하여 상반기는 2012. 6. 29(금), 하반기는 2012. 12.28(금)까지 총무과로 공문 제출
- ▶ 본청과 직속기관의 취합자료를 상반기 2012. 7. 6, 하반기 2013. 1. 4 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에 입력

■ (지역교육청)

- ▶ 지역교육청 각과, 공립단설유치원은 "[붙임 3]서식의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작성하여 상반기는 2012. 6. 29(금), 하반기는 2012. 12.28(금) 까지 지역교육청 해당과로 공문 제출
- ▶ 지역교육청과 공립단설유치원 무기계약 전환 실적을 수합하여 상반기는 2012. 7. 6, 하반기는 2013. 1. 4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에 입력

■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 ▶ 학교별 무기계약 전환 실적을 상반기는 2012. 7. 6, 하반기는 2013. 1. 4 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에 입력

< 자료집계시스템 제출 요령 >

-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붙임 3】을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출[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없어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수합하여 관리하고자 하니,
- (본청 각과, 지역교육청, 공립단설유치원, 공립 초·중·고·특수학교)는 반드시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붙임 3】을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상반기는 2012.7.13(금), 하반기는 2012.1.11(금)까지 제출

□ 문의

- 도교육청 총무과(042-580-7267),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2-2110-7331)

【붙임 1】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 현황

2012. 3월 말 현재

순번	사업명	직종명	인원	사업부서	담당자	비고
1	교무행정실무원 운영	교무행정실무원	107	학교정책과	최명남	
2	Wee프로젝트 운영	전문상담사	20	"	한길자	
3		임상심리사	2	"	"	
4		사회복지사	10	"	"	
5		청소년지도사	5	"	"	
6		대안교육전문가	1	"	"	
7		심리치료사	1	"	"	
8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특수교육실무원	294	"	정명옥	
9	특수교육 치료 지원	특수교육치료사	40	"	"	
10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 종일반 방과후강사	21	"	이종권	
11	특수학교 기숙사 운영	생활지도원	6	"	"	
1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편의 지원	특수교육 통학안전요원	32	"	"	
13	학부모지원 정책 추진	학부모지원컨설턴트	1	"	박필용	
14		학부모지원컨설턴트 (지역전문가)	7	"	"	
15	창의경영학교 운영	창의경영학교 보조인력	1	교육과정과	윤희송	
16	초등돌봄교실 운영	초등돌봄강사 (15시간 이상)	339	"	한만희	
17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인력	17	"	"	
18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교육복지사	63	"	김경수	
19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원어민보조교사 코디네이터(초등)	1	"	최미경	
20		원어민보조교사 코디네이터(중등)	1	"	"	
21	과학실험실무원 운영	과학실험실무원	150	창의인재육성과	안효태	
22	전산실무원 운영	전산실무원	141	"	"	
23	특성화고 취업지원	산학협력코디네이터	3	"	이진구	
24	학교급식 운영	영양사	213	체육문화건강과	고은옥	
25		조리사	224	"	"	
26		조리원	2,837	"	"	
합계	17개 사업	26개 직종	4,537			

※ 무기계약 전환 직종이라 하더라도 '55세 이상' 또는 '주 평균 15시간미만 근로' 등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해당될 경우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

【붙임 2】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 직종 현황

2012. 3월 말 현재

순번	사업명	직종명	제외사유	인원	사업부서	담당자	비고
1	다문화가정학생 교육지원	한글사랑선생님	기간제법시행령 3조3항6호 (15시간 미만)	25	학교정책과	김기경	
2		이중언어강사	기간제법시행령 3조3항6호 (15시간 미만)	25	"	"	
3	청원경찰 운영	청원경찰	기간제법 4조1항1호 (2012년 사업종료)	1	"	민병희	
4	학교 안전경비인력 운영	배움터지킴이	기간제법 4조1항4호 (55세 이상 근로자)	597	"	"	
5	통학안전요원 운영	통학안전요원	기간제법시행령 3조3항6호 (15시간 미만)	276	"	신세균	
6	Wee프로젝트 운영	전문상담인턴교사	기간제법시행령 3조2항1호 (정부 일자리창출사업)	111	"	한길자	
7	유치원 통학안전요원 운영	유치원 통학안전요원	기간제법시행령 3조3항6호 (15시간 미만)	100	"	신민숙	
8	행복나눔 돌봄유치원 운영	유치원 야간돌봄전담요원	기간제법시행령 3조3항6호 (15시간 미만)	18	"	"	
9		엄마풀온종일 돌봄유치원강사	기간제법시행령 3조3항6호 (15시간 미만)	106	"	"	
10		행복나눔 돌봄유치원강사	봉사·위축직	129	"	"	
11	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교육 지원	희망유아교육사	봉사·위축직	28	"	"	
12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3세대하모니	봉사 위축직, 기간제법 4조1항4호 (55세 이상 근로자)	568	"	구미숙	
13	누리과정보조인력 운영	누리과정보조인력	기간제법시행령 3조3항1호 (다른 법령 기간 적용 - 기간제교사)	106	"	"	
14	유아학비 업무지원	유학학비업무위탁인력	기간제법 4조1항1호 (5개월 한시적 운영)	6	"	김부환	
15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인턴교사	기간제법시행령 3조2항1호 (정부 일자리창출사업)	90	"	정명옥	
16	학부모지원 정책 추진	학부모지원컨설팅센터 (전문상담사)	기간제법 4조1항1호 (2012년사업종료)	1	"	박필용	
17	교과교실제 운영	교과교실제강사	기간제법 4조1항1호 (2012년사업종료)	305	교육과정과	김선완	
18	학교도서관 활성화	학부모 명예사서	봉사·위축직	160	"	김영심	

순번	사업명	직종명	제외사유	인원	사업부서	담당자	비고
19	인턴교사 채용 지원사업	기초학력 인턴교사	기간체법시행령 3조2항1호 (정부 일자리창출사업)	124	"	김은하	
20	초등돌봄교실 운영	초등돌봄강사 (15시간 미만)	기간체법시행령 3조3항6호 (15시간 미만)	191	"	한만희	
21	방과후학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	방과후학교 엄마품온종일돌봄강사	1년 단위 풍모사업, 고용노동부자침 (행정수요 변화)	153	"	한만희	
22	충남교육도우미제 운영	방과후코디네이터	봉사·위축직	348	"	이진호	
23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인턴교사	기간체법시행령 3조2항1호 (정부 일자리창출사업)	32	"	"	
24	영어 교육 지원	영어회화전문강사	기간체법시행령 3조3항1호 (다른 법령 기간 적용-영어회화강사)	185	"	최미경	
2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 지원	산업체우수강사, 취업지원관	기간체법 4조1항1호 (2012년 사업종료)	71	창의인재육성과	이진구	
26	인턴교사 채용 실행계획	예술교육인턴교사	기간체법시행령 3조2항1호 (정부 일자리창출사업)	3	체육문화건강과	권선탕	
27	학교운동부 운영	운동부코치	기간체법시행령 3조3항7호 (체육코치)	207	"	권순철	
28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스포츠강사	기간체법시행령 3조3항7호 (체육코치)	208	"	최충식	
29	학교보건 인턴교사 지원	학교보건인턴교사	기간체법시행령 3조2항1호 (정부 일자리창출사업)	30	"	이완택	
30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	학원단속실무원	기간체법 4조1항1호 (2013년 2월 사업종료)	10	평생교육행정과	안재화	
3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공공도서관야간근로자	기간체법시행령 3조2항1호 (정부 일자리창출사업)	19	"	"	
32	클린콜센터운영	클린콜센터요원	기간체법 4조1항1호 (2012년 사업종료)	3	총무과	김지순	
33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업무관리클센터요원	기간체법 4조1항1호 (2012년 사업종료)	2	"	김정구	
34	청사관리	청사안내원	기간체법 4조1항1호 (2012년 사업종료)	1	"	이지훈	
합계	31개 사업	34개 직종		4,239			

【붙임 3】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및 실적 제출 서식

*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실적입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며, 동 서식은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수립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제출 서식)

연번	직 종		비정규직 근로자수	업무 유형		전환대상규모 (예상)	전환예정시기		
	대분류	중분류		상시·자속 (전환대상)	일시·간헐 (전환제외)		'12년 상반기	'12년 하반기	'13년 상반기
계			10	9	1	6			
1	사무보조	사무보조	5	4	1	3			
2	기 타	초등돌봄강사	5	5	0	3			
3	기 타	통학안전요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에 나오는 대표 직종 : 대분류, 중분류 동일 기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에 나오지 않는 직종 : 대분류 - 기타, 중분류 - 직무분석 직종명 기재

□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제출 서식)

연번	직 종		비정규직 근로자수	업무 유형		전환자수 (B)	미전환자수 (A-B)	미전환사유*
	대분류	중분류		상시·자속 (전환대상 A)	일시·간헐 (전환제외)			
계			10	9	1	5	4	
1	사무보조	사무보조	5	4	1	3	1	2
2	기 타	초등돌봄강사	5	5	0	2	1	19
							2	20

* 예: 1.사업완료기간이 정해진 경우 2.휴직·파견 근로자 대체자 3.학업·직업훈련 등 이수 4.고령자 5.박시후위소지자 6.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7.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종 8.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9.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10.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일자리 11.다른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12.군사관련 종사자 13.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등 업무 종사자 14.고등교육법상 조교, 겸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 15.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해당자 16.초단시간 근로자(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17.체육선수 및 지도자 18.연구업무 종사자, 연구 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자 19.근무설적 불량자 20.향후 업무량 감소

[붙임 4]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 전환기준 관련 사업·직종별 직무분석 실시 결과표 [서식]

확인자 직) 교감(행정실장) 성명) ○○○ 서명)
작성자 직) 교사(행정 0급) 성명) ○○○ 서명)

【붙임 6】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 기준 및 관련 법령 발췌

□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 기준

- 연중 계속되는 업무^①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②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③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이 아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기획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를 판단

< 상시·지속적 업무 세부 판단기준 >

①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 *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여 담당하는 경우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 동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 급식조리원 등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② 분석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어온 업무인지 여부

- * 사업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내에서 유사·동일한 업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경우는 포함

③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 * 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우 위탁 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체 판단(매년 공모선정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단순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업무 등인 경우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 가능
- 상시·지속적 업무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

□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무기계약 제외 사유)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연번	업무명
법제4조제1항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법제4조제1항2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제4조제1항3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법제4조제1항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4조 제1항 5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1항 3호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의 전문자격증(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2항 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2항 2호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4조 제1항 6호	시행령 제3조 제2항 3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3항 1호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시행령 제3조 제3항 2호 군사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3항 3호 특수한 경력을 갖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제3항 4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 겸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시행령 제3조 제3항 5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조 제1항 7호	시행령 제3조 제3항 6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시행령 제3조 제3항 7호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 및 체육지도자
	시행령 제3조 제3항 8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